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657300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전국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8. 8. 14. 진정인은 감금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거주지에 대하여 피

진정인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압수수색 당시, 진정인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에 들고 있던 압수영장을 빼앗아서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등을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압수하였고 진정인의 휴대폰까지 압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8. 7. ○○○(정신지체장애 3급)의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와 진정인이 ○○○을 몰래 데려가 허락 없이 혼인 신고한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피진정인은 감금·장애인위계등간음·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고, 혐의 등을 구증하기 위해 진정인이 사용·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및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

2019. 8. 14.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진정인 등이 약 20분 동안 진정인의 집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피진정인이 창문으로 올라가 집에 진정인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진정인이 문을 열지 않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피진정인 등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정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자 진정인은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스스로 꼼꼼히 열람을 하였다. 영장을 읽을 시간을 5분 이상 주었고,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영장을 회수하였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노트북 1개, 외장하드 1개, LG 휴대폰 1개, 검정색 휴대전화 1개, CD 90개, 노트파일 1개 등을 압수하면서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완료 후 14:00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압수물 중 노트파일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였으나, 문언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같은 날 14:45경 피진정인과 ○○○ 경사가 진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위 방문 당시 진정인의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라 진정인과 연락할 수 없었다. 집주인이 문을 열어 주어 집주인 참여하에 진정인의 집 내부에 노트파일을 반환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압수목록에 없는 서류 등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지방경찰청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촬영 영상, 압수증명서,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 당시 진정인은 감금 및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이고,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으로 위 진

정인 혐의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찰관이다.

나. 2018. 8. 14.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 등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진정인이 약 1분간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는 모습, 진정인이 압수수색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영장을 뺏는 모습, 피진정인이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 진정인이 영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며 항의하는 모습, 피진정인이 구두로 설명하는 모습, 진정인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압수증명서에 서명하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다. 같은 날 오전 10:20경부터 11:40경까지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노트북 1개, 외장하드 1개, LG휴대폰 1개, 검정색 휴대전화 1개, CD 90개, 노트파일 1개를 압수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진정인 등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다시 방문하여 집 주인 참여하에 노트파일 1개를 반환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8. ○○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진정인의 주거지에 있던 다이어리 및 노트, 메모지 등을 압수한 사실이 있다.

라.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2018. 8. 13.자 ○○○○지방법원)에 따르면 압수할 물건의 대상으로 노트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압수증명서(2018. 8. 14.)에 의하면, 노트북 1개, 외장하드 1개, LG휴대폰 1개, 검정색 휴대전화 1개, CD 90개, 노트파일 1개를 압수하였다는 기록과 진정인이 압수물품에 대하여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압수영장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영장을 회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 회수 후 10여 분에 걸쳐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9. 18진정0124600 결정)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압수수색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자가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집행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대폰 2개를 압수한 행위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 행위로 보여지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위반이 인정된다.

첫째, 당시 촬영 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하는 과정에 피진정인 등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이었던바, 당시 진정인의 행위가 영장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영장의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영장을 빼앗으며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제시만으로는 피수색자가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영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며 영장 뒷부분을 보여 달라고 몇 차례 요청하자 압수수색의 대상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영장 뒷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기재된 내용(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집행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압수수색의 상대방

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한 사유'와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장기미제사건 등에 대한 수사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사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수사상 적절하지 않아 제한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압수가 필요한 사유의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넷째, 압수수색 당시, 피진정인 등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트파일을 압수하였다가 반환한 사정을 감안하면, 진정인이 압수목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압수수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와 같은 압수수색영장 제시가 상당부분 수사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 점,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트파일 압수는 피진정인이 압수 당시 압수증명서에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피진정인이 압수대상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곧바로 반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되,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영장 집행 시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
규칙에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과, 규칙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일선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과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6.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3조(영장의 제시) ①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해

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